

[별지 9]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76호서식]

(앞쪽)

상담일	실업인정 대상기간	실업 인정일수	급여종류	지급금액	다음 번 상담일	상담시간	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

고용보험 수급자격증

유의사항

1.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2.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, 만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4. 실업급여,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,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(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□□-□□□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

-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,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.
-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, 취업지원 서비스,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, 직업지도,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.
-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